

●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-048호

「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」 폐지(“17.10.1.)에 따라 같은 규정 제2조제2항을 근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-15호를 폐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28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공고

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공고(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-015호)를 폐지한다.

부 칙<제2017-048호, 2017. 9. 28.>

이 공고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